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
국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16. 정부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 7.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8.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 9. 9.)

상정,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24. 10.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4. 10. 3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1. 경호공무원 강등 시 계급정년 제도 정비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우 그 계급정년¹⁾을 강등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정년으로 하고, 근무연수 계산 시 강등 전 계급에서 근무한 근무연수와 강등 후 근무연수를 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계급정년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계급정년은 1999년 당시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의 신분이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같이 도입되었음.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년) ①·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③ (생 략)	제11조(정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하거나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u> <u>④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근무연수를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이 경우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후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이 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와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u> <u>⑤ (현행 제3항과 같음)</u>
◦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부터 적용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하여, 소속 경호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연령정년에 따라 5급 이상은 58세, 6급 이하는 55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계급정년에 따라 2급은 4년, 3급은 7년, 4급은 12년, 5급은 16년까지 해당 계급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 제도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에도 적용되고 있음.

[표-2] 공무원 계급정년 관련 입법현황

구 분		경호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근거법률		「대통령경호법」	「경찰공무원법 ²⁾ 」	「소방공무원법 ³⁾ 」
정 년	연령	▶ 5급 이상: 58세 ▶ 6급 이하: 55세	▶ 60세	▶ 60세
	계급	▶ 2급: 4년 ▶ 3급: 7년 ▶ 4급: 12년 ▶ 5급: 16년	▶ 치안감: 4년 ▶ 경무관: 6년 ▶ 총경: 11년 ▶ 경정: 14년	▶ 소방감: 4년 ▶ 소방준감: 6년 ▶ 소방정: 11년 ▶ 소방령: 14년
강등 시 계급정년 관련규정		규정 없음	▶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 ▶ 계급정년 산정 시 강등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 근무연수 합산	

다만, 「대통령경호법」은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과 달리 소속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의 계급정년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⁴⁾ 계급정년에 도달한 경호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⁵⁾

2)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③ ~ ⑥ (생략)

3) 「소방공무원법」 제25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④ ~ ⑤ (생략)

4) 반면, 현행법은 소속 경호공무원의 ‘강임(降任)’ 시 계급정년 적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경호법」 제11조(정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예컨대, 경호공무원이 2급으로 3년 근무한 경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계급정년(4년)에 도달하게 되나, 그 전에 3

이에 개정안은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으로 하고, 근무연수 계산 시 기존 계급에서 근무한 근무연수와 강등 후 근무연수를 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계급정년이 없는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면직하거나 2급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4년)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경호공무원 강등 시 계급정년 적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은 ‘1급 직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계급정년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경호처 직원⁶⁾ 중 ‘경호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이를 ‘1급 경호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임.

급으로 강등되면 7년의 계급정년이 다시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6) 현행법상 ‘직원’이란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의미함.

「대통령경호법」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손실보상 근거규정 신설

개정안은 대통령령호처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u> <u>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u> <u>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u> <u>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u> <u>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u> <u>⑤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u>

	<u>청구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u> <u>⑥ 처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	

「대한민국헌법」 제29조⁷⁾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⁸⁾ 및 「민법」 제750조⁹⁾ 등에 따라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

또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 제23조제3항¹⁰⁾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비재산상’ 손실(생명·신체)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헌법상

7)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8)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본권 보장규정¹¹⁾(제10조·제11조 등) 및 재산상 손실보상 규정(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당연히 보상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함.¹²⁾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일반법은 없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손실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표-4] 손실보상 관련 유사입법례 비교

구 분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의2) ¹³⁾	소방기본법 (§49의2) ¹⁴⁾	감염병예방법 (§71) ¹⁵⁾
손실 발생 원인	적법한 직무집행	적법한 직무집행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	예방접종 또는 치료 의약품 투여
보상 범위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손실	생명·신체
지급자	대통령경호처장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1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2024), p.949-951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경호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는 손실보상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한편,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가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 14)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중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경호처는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 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¹⁶⁾에 따라 법률상 최대 존속기한인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5년으로 설정된 것이고,

존속기한 만료 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박성준 위원)

개정안은 경호공무원 강등 시 계급정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을 위한 필수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존속기한(5년)을 삭제하고, 조항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심의’로 통일하는 한편, 중복내용의 문구를 간결하게 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0.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을 위한 필수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존속기한(5년)을 삭제하는 한편, 조항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심의’로 통일하고, 법문언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11조제3항·제4항, 안 제20조
및 안 부칙 제1조·제2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
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
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
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안 제20조제3항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청구인”을 “자”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청구인이”를 “자
가”로 하여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
5항”으로 하여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정년) ①·② (생략) <u><신설></u>	제11조(정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하거나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u>	제11조(정년) ①·② (개정안과 같음) <u>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u>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u> <u>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u>

<신 설>

③ (생 략)

④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근무연수를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이 경우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후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이 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와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삭 제>

④ (현행 제3항과 같

<신 설>

같음)

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
의 적법한 직무집행
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
다.

1. 손실발생의 원인

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
명·신체 또는 재
산상의 손실(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
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
의 직무집행에 자
발적으로 협조하
거나 물건을 제공
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

음)

제20조(손실보상) ①

(개정안과 같음)

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
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
실

② 제1항에 따른 손
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
의 완성으로 소멸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손
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
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손
실보상심의위원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심의-----

-----.

<삭 제>

	<u>는 이 법 시행일부</u> <u>터 5년간 존속한다.</u> ⑤ <u>처장은 거짓 또</u> <u>는 부정한 방법으로</u> <u>보상금을 받은 청구</u> <u>인에 대하여는 해당</u> <u>보상금을 환수해야</u> <u>한다.</u> ⑥ <u>처장은 제5항에</u> <u>따라 보상금을 반환</u> <u>하여야 할 청구인</u> <u>이 대통령령으로 정</u> <u>한 기한까지 그 금</u> <u>액을 납부하지 아니</u> <u>한 때에는 국세 강</u> <u>제징수의 예에 따라</u> <u>징수할 수 있다.</u> ⑦ <u>제1항부터 제6항</u> <u>까지에서 규정한 사</u> <u>항 외에 손실보상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④ ----- ----- ----- 자 ----- ----- ----- -----. ⑤ ----- 제4항 - ----- ----- 자가 ----- ----- ----- ----- -----. ⑥ ----- 제5항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 ----- -----
--	--	---

	시행한다. 다만, <u>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u>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적용례) <u>제11조제3항 및 제4항</u>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u>제11조제3항 및 제4항</u>----- -----. 제2조(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적용례) <u>제11조제3항</u>----- ----- ----- ----- ----- ----- --- 제3조(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개정안과 같음)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

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년) ①·② (생략)	제11조(정년)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u>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u> 2. <u>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u>
<u>③ (생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u><신설></u>	제20조(손실보상) ① <u>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u>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